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속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7일, 서석영 의원 외 19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2023년 8월 30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서석영 의원

나. 제안이유

○ 포항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컨테이너 외 신규 화물 지원제도 마련으로, 물동량 확대 및 항로개설을 통한 항만운영 효율성과 도내 해양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재규정함(안 제2조)

○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 지원금 용어를 재규정하고 컨테이너 외 화물에 대한 지원금 관련 사항을 신설함 (안 제5조)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진영)

가. 본 개정 조례안은

- 포항 영일만항의 활성화 및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화물 지원제도 마련을 통한 물동량 확대 및 항로개설로 도내 해양물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용어를 재규정하여 컨테이너 화물 외 화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4조는 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시장·군수의 협의에 의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는 제1항제4호의 “화물이용장려금”을 “항만이용장려금¹⁾”으로, 제4항의 “특정화물유치지원금²⁾ 화물이용장려금”을 “특정화물유치지원금은 항만이용장려금”으로 개정하여 조항간(제4조제2항)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조항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 도지사·시장·군수의 협의를 통해 컨테이너화물 외의 화물에 대한 지원의 기준·규모·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지원범위 대상의 확대를 통한 항만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영일만항을 이용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장려금

2) 영일만항에 전략적으로 유치가 필요한 화물을 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지원금

다. 종합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용어를 재정비하고, 컨테이너 화물 외 신규 화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향후 포항영일만항의 물동량 확대 및 항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